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6.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확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결과 이의신청 기간 변경(안 제7조)

- 당초 : 10일 ⇒ 변경 : 60일

나. 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정비(안 제12조)

- 당초 : 여성위원 40퍼센트 이상 구성

- 변경 :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

다. 위원회 위원 수당 등 지급 기준 정비(안 제15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10일”을 “60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응해야한다”를 “응해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를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으로, “이하”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총수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구미시의회 의원”을 “구미시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중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구미시각중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12조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평가의 원칙) ① ~ ③ (생략) ④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u>아니한다</u> .	제4조(평가의 원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아니한다</u> .
제7조(평가의 실시) ① (생략) ② 시장은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중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u>10일</u>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7조(평가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60일</u> -----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자료의 요청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u>응해야한다</u> .	제8조(자료의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응해야 한다</u>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u>위원회는</u> <u>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u>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u>위원회의</u> <u>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u>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총수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한다.
다만, 직업 또는 단체의 특성상
여성의 참여가 어렵거나 여성 위원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 2. (생략)

3. 구미시의회 의원 3명 이내

4. (생략)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으로서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④ · ⑤ (생략)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포함한 ----- 이내-----
-----.

② -----

-----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현행과 같음)

3. 구미시의회의원 -----

4.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수당 등) -----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략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⑦ 생략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 7. 생략

⑨ 생략

소관 실·과		청소행정과
입 안 자	과 장	주 광 하
	담 당	장 재 일
	담 당 자	이 동 섭 (480-5204)